

2017년 6월 17일 지방직 9급 지방세법

아모르이그잼학원 세법 박창한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와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② 지방세 부과와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 ④ 납세자가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와 제척기간은 7년이다.

1 ④

납세자가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와 제척기간은 10년이다.

구분	제척기간
1. 납세자가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 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3. 그 밖의 경우	5년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10년

문 2. 「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②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 ③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④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2 ③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에 해당한다.

미납세반출	납부의무 면제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또는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나.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다.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4.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1. 수출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용도 가.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나.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문 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④

모두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징수유예 사유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문 4.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①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①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수정신고기간	감면율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100분의 50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20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

문 5.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다.

④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 | |
|---|
| 1.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
|---|

문 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6 ③

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문 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 ㄱ. 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 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ㄹ.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 ㅁ.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7 ③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석탄과 「광업법」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문 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③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④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8 ②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이더라도 대도시중과제외업종(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은행업 등)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1. 사회기반시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
2. 은행업
3.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 및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
4. 전기통신사업
5.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6.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

문 9.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9 ④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세관장)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10.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0 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문 11. 「지방세법」 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 |
|--------------------|
| ㄱ. 취득세 |
|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 ㄷ. 담배소비세 |
| ㄹ. 주민세 |
| ㅁ. 레저세 |
| ㅂ.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ㄹ, ㅁ, ㅂ

11 ③

취득세, 주민세 및 레저세는 특별징수제도가 없다.

세목	특별징수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ㄷ. 담배소비세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ㄹ.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문 12.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 ②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④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12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을 부과한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문 1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 ②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 ③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 ④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3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강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임의)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 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문 14.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 ① 3개 ② 4개
- ③ 5개 ④ 6개

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문 15.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 ②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15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문 1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16 ②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지방세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 17.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 기계장비(「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17 ③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

1.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을 제외]의 납세의무자

문 18.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8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각각 다음과 같다.

구분	납세지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보험을 포함)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4.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문 19.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②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19 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문 20. 「지방세법」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단위:%)

사례	구 분	설립 시 주식등의 비율	증가한 주식등의 비율	주식등의 비율 누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
A	법인설립 시 취득	35	-	35	-
	증자 등으로 취득	-	25	60	60
B	법인설립 시 취득	60	-	60	-
	증자 등으로 취득	-	20	80	80
C	법인설립 시 취득	10	-	10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50	60	60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10	70	10
D	법인설립 시 취득	10	-	10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20	30	-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35	65	65

- ① A ② B
③ C ④ D

20 ②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였으나, 그 이후에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분증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즉, 설립시 60% 였으며, 이후 20% 추가취득으로 80%가 되었다면 20%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수고하셨습니다.